



# 장위엔 성도시 공상행정관리국 상업비밀침해 행정벌금 부과 결정 불복 사건

## 08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사천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0)川行终字第23号
판결 일자	2000년 11월 08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상업비밀침해 인정)
원심원고(상소인)	장위엔		
원심피고(피상소인)	성도시 공상행정관리국		
원심 제3자	성도 마이푸전기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0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45조, 제61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대한 문제해설 제46조, 제97조, 민사소송법 제120조		
영업비밀	경영정보 및 상업비밀 문서 유출 관련		
키워드 (Keyword)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현장조사(现场检查), 행정처벌(行政罚款),		

### 02 사건 개요

성도 마이푸전기 유한공사(이하 '마이푸 공사')는 컴퓨터 네트워크 제품(모뎀)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다. 1996년 3월, 장위엔은 마이푸 공사에 고용되었고, 1997년 1월, 유통부서 부서장으로 임명되었지만, 1997년 5월 사직하였다. 이후, 1998년 3월 창푸공사를 설립,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 제품(모뎀)을 판매하였다.

장위엔이 마이푸 공사의 유통부서 부서장에서 사직할 무렵,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이푸 공사의 고객성명, 주소, 고객상황 등을 포함한 상업비밀인 경영정보를 기록한 자료들을 습득하였다. 장위엔은 사직 후, 창푸 공사를 설립, 이러한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모뎀제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마이푸 공사는 성도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장위엔의 상업비밀침해를 신고하였고, 시공상국은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장위엔의 사무실에서 마이푸 공사의

---

상업비밀을 찾아내었는데, 장위엔은 그에 대한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도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장위엔에 대해서 상업비밀침해를 인정하여 위법행위 중단 및 벌금 8만 위엔의 부과를 결정하였다. 장위엔이 이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도 장위엔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위엔이 이에 불복하여 상소한 것이다.

---

### 03 주요 쟁점

원심 제3자 및 원심피고(권리자측)	⇒	⇐	원심 원고(침해자 측)
장위엔이 마이푸공사의 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공사를 경영하였다.			마이푸 공사의 제품 판매 및 고객 정보 등은 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위엔이 마이푸 공사의 《노동계약》, 《상업비밀보호협약》 등의 체결 규약을 위반하였다.			마이푸 공사와 창푸 공사의 모델에 있어서 전송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상품이 아니다.
장위엔의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마이푸 공사의 영업기밀인 경영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장위엔의 행위는 마이푸 공사의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 04 판결 요지

---

마이푸 공사 제품의 판매경로, 수량, 가격, 품질, 대금, 사용자 상황, 재무제표수치 및 관련 자료, 고객 정보 등의 경영정보는 대중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또한 마이푸 공사는 공사의 직원들과 《노동계약》, 《상업비밀보호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경영정보는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마이푸 공사의 경영정보는 상업비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장위엔은 마이푸 공사의 상업비밀인 경영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충분한 증거를 들어 증명하지 못하였다. 마이푸 공사의 모델 제품과 창푸공사의 모델 제품은 전송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 증거의 증명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소이유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장위엔의 상업비밀침해는 성립되고,

---

## 05 Key Point

---

본 판결은 중국상업비밀 보호법제의 특유 제도인 “행정구제”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 법제에서는 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권리자가 민사 구제절차와 형사 구제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행정 구제방법은 없다.

---

중국의 경우, 국무원 산하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상업비밀 관련 보호 업무를 담당하므로,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를 하면,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사건 조사하여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당사자가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 사건과 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